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1일

3. 제안이유

- 재난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조정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안 제3조)
- 지원단 구성, 단장임무 및 실무팀 편성 (안 제4조~제6조)
- 재난상황 공유·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 (안 제7조 및 제8조)

5. 검토의견

가. 제정 필요성

-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어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함.
-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및 현장 복구에 자원봉사자들이 역할 수행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활동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5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재난발생 장소 및

소관 시·군 지원단의 위치, 소관 시·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자원봉사의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지원단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도모하였고,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음(표1 참조).
- 단원은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기관의 직원,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단장의 임무에 대한 것으로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단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표1 참조).
-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인력 및 자원 지원, 시·군과 중앙 간 연계를 위해 실무팀 편성의 근거를 마련함(표1 참조).

[표 1] 충청북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실무팀 구성 및 업무

구 분	구 성	업 무
단장	• 단장: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 자원봉사센터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상황 총괄팀	• 팀장: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지대본 보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적 지원 • 시·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업무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대외 협력팀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 시·군 및 타기관 단체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시·군 지원단 파견 • 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기타 현장 지원업무 추진 • 자원봉사자 수송지원 • 임시대피소 운영지원
자원 지원팀	•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재난 현장 배분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 타시도 재난자원 요청 및 관리

※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안 제7조’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 현황과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지원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단장은 봉사 활동 내역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규정하였음.

- 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하여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단 운영의 보완 등을 위해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하였음.

- 현재(2023년 5월 기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14개 시·도이며, 충청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는 미 제정임.(표2 참조)

[표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0.17.
2	부산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7.6.
3	대구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0.11.
4	인천	인천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4.21.
5	광주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1.4.
6	대전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2.29.
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7.15
8	경기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3.1.2.
9	강원	강원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2.23.
10	전북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4.15.
11	전남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0.13.
12	경북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9.22.
13	경남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12.29.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1.4.14.

다. 종합 검토의견

- 최근의 재난은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로 인해 민간 차원의 자원 봉사활동만으로는 재난·재해 피해복구 및 수습을 위한 대응과 대처가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재난현장의 문제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단, 재난의 다양화, 복잡화, 대형화 등 재난유형 및 규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또한, 지원단의 민·관 공동단장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4개 실무팀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시·군과의 연계업무 등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의 성패를 가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 임: 충청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